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
폐지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폐지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모법의 근거 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5조(장학금의 지급)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인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폐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3. 3. 24. ~ 5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폐지령안

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을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224